신구조문 대조표

3-1-33 교육 수요자 만족도 관리 규정

0100 = 7 = 10	
현 행	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비 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계 획, 시행, 분석, 평가, 환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 여 교육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강문화산업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고 한다)에서 제공하는 제반 교육서 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조사와 관련된 계획, 시행, 분석, 평가, 환류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교육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교육수요자 만족도는 교육 수요자인 재학생, 졸업생, 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서비스 전반의 성과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 교육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리 체계를 의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교육 수요자'라 함은 본 대학으로부터 교육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제공받 는 재학생, 졸업생 등을 말한다. ② '교육수요자 만족도'라 함은 유·무형의 각종 교 육서비스에 대한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를 말한다.
제2장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 제4조(대상 및 목적) ① 대학 차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재학생과 졸업생을 대상으로 대학생 활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교육서비스 등 <mark>의</mark> 만족 도와 산업체를 대상으로 졸업생 역량의 업무 적합 도 등을 조사하여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여 대학 전 반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 제4조(대상 및 목적) ① 대학 차원의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재학생과 졸업생 등을 대상으로 대 학생활 전반에 걸친 유·무형의 교육서비스 등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의 성과를 측정하여 대학 전반 의 교육 품질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레드 (조기 조키 미 조라버리) ① ㄱㅇ ᄉㅇ; 마

제5조(조사 주기 및 주관부서) ① 제학생, 졸업생, 산업체 만족도 조사는 1년 단위로 조사하며 재학생은 1학기 말, 졸업생과 산업체는 2학기 중 실시한다. 그 외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필요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는 성과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경우에 따라 조사 시행, 결과분석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조사 주기 및 주관부서) ①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1년 단위로 조사하며 재학생 대상은 1학기 말, 졸업생 대상은 2학기 중 실시한다. 그외 교육 수요자 만족도 조사는 필요시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대학 차원의 만족도 조사는 대학의 성과관리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며 경우에 따라 조사 시행, 결과분석 등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정안
제7조(조사 실시) ①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를 원 칙으로 대면, e-mail, 온라인설문, 우편 등의 방법 으로 실시한다. ② 재학생 및 졸업생은 교육과정, 학생서비스, 교 직원, 물리적 환경, 전반적 만족도, 접근용이성 등 을 포함하여 대학생활과 대학발전을 위한 기타 항 목을 조사하며, 산업체를 대상으로는 우리대학 졸 업생의 역량 및 산학협력 관련 만족도 분석 등을 조사한다.	제7조(조사 실시) ① 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를 원칙으로 대면, e-mail, 온라인설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만족도 조사 실시 전 설문 문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할 수 있으며, 설문 문항은 교무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③ 재학생 및 졸업생 만족도 조사는 교육과정, 학생서비스, 교직원, 물리적 환경, 전반적 만족도, 접근용이성 등을 포함하여 대학생활과 대학발전을위한 기타 항목을 조사한다.
서 및 스쿨(학과)의 사업계획서에 환류 방안이 반	(학과)의 사업계획서에 환류 방안이 반영되었는지
영되었는지 검점한다.	점검한다.
③ 주관부서 <mark>에서는</mark> 위 ①항을 바탕으로 만족도 조	③ 주관부서는 위 ①항을 바탕으로 만족도 조사
사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 계획을 수립한다.
제3장 부서 및 스쿨(학과) 차원의 만족도 조사 제15조(관리) 부서 및 스쿨(학과)이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는 그 시기와 내용, 방법, 절차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고, 관련 위원회을 통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류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관리한다.	제3장 부서 및 스쿨(학과) 차원의 만족도 조사 제15조(관리) 부서 및 스쿨(학과)이 필요에 의해 시행하는 만족도 조사는 그 시기와 내용,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별도 관련 규정에 명시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회를 통해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환류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여 관리할수 있다.
<부칙 추가>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9월 00일부터 시행한다.